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8. 9. 4. 화순군수

나. 회부일자 : 98. 9. 5

다. 상정일자 : 98. 9. 14

(제6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2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내무과장 최영욱

나. 개정사유

- 기능최퇴, 유사·중복 기구의 통·폐합과 현행기구의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한 읍면 위임사무의 소관을 새롭게 정함.
- 군·읍면간 사무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

다. 주요내용

- 별표2의 권한 위임사항을 별지와 같이 변경
- 위임사무의 삭제 - 읍면 6급 이하 공무원 정기 호봉 승급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양정열)

- '6급 이하 공무원의 정기 호봉 승급'을 군의 업무로 회수한 것 이외는 읍면 위임 사무의 변동은 없으며 단지, 행정기구의 명칭변경에 따른 업무 조정을 위한 개정 조례임.
- 향후 읍면이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기능이 전환될 것에 대비하여 전산화 등을 통하여 통합처리가 가능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에서 처리토록 함으로써, 읍면은 명실공히 주민서비스 업무만을 수행토록 하여야 할 것임.

○ 금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권 한 위 임 사 항

(개 정 안)

실과 소명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및 적 용 법 률	수입기관	비고
실과소 공 통	1. 추정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로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사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마목	읍면장	
총무과	1. 읍면 6급이하 공무원 휴직발령 2. 읍면 휴직공무원 복직발령 3. 읍면계장 출장소장 보직 발령 4. 읍면 8급이하 지방공무원 특별 임용 제청 5. 읍면 지방공무원 시보 해제 6. 이 행정 지도 7. 문서보관 및 폐기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3항 ○ 사무관리규정 제28조 제31조	읍면장 " " " " " "	
재무과	1. 군세에 관한 제증명 발급 2. 군세의 납세고지서 교부 3. 군세의 체납액 징수 독려 4. 군세 과세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 5. 군유 잡종재산 대부 및 사용허 가에 따른 자료 조사 6. 군유 잡종재산 보존관리 및 실태 조사 7. 군유 잡종재산 임대 및 사용료 징수 독려 8. 군유 은익재산 발굴	○ 지방세법 제4조 및 화순군 군세조례 제6조 ○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 규칙 제3조 ○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 규칙 제4조 ○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 규칙 제26조 ○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	읍면장 " " " " "	
민 원 봉사과	1. 인장업 신고 사무 2.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징수 3.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신고의 수리 4.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 5.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용벽등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 6. 건축물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용도 변경허가 또는 소유권 표시사 항은 제외) 신고의 수리	○ 인장업법 제3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 건축법 제9조 ○ 건축법 제15조 제2항 ○ 건축법 제72조 ○ 건축법 제9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제4항	읍면장 " " " " "	

실과 소명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및 적 용 법 률	수임기관	비 고
문 화 관광과	1. 공연신고 2. 한천농악 전수회관 관리 운영	○ 공연법 제14조 제2항 ○ 화순군한천농악전수회관설치 및운영조례 제4조	읍면장 "	
사 회 복지과	1. 위생 집객업소 지도 2.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3.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금품 지급 4. 노임소득사업 취로대상자 선정 5. 노임소득사업(직영) 집행 6. 영세민 취로사업장 지도감독 7. 매장, 개장, 화장 신고 8.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 공중위생법 제21조 및 식품위 생법 제17조 ○ 생활보호법 제17조 ○ 생활보호법 제9조 ○ 생활보호법시행규칙 제16조 ○ 생활보호법시행규칙 제16조 ○ 생활보호법시행규칙 제16조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 ○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읍면장 " " " " " "	
환경과	1. 가축사육제한구역내 가축사육 단속 2. 건축법 제9조, 제15조 제2항, 제72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정화조 설치(변경)신고 및 준공 검사에 관한 업무 3. 공공하수도 관리(도시계획구역내) 4. 수도사용료 부과 징수 5. 수도폐전 신청 처리 6. 쓰레기 봉투 판매인 지정 7. 쓰레기 봉투 판매인 지도관리 8. 개인급수전 설치허가 9. 급수사용료의 이의신청 처리 10.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11. 급수신고업무 처리 12. 급수장치 관리의무 승계업무 처리 13. 수도사용료 감액 신청 처리 14. 급수공사의 승인 15.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16. 급수공사의 시행 17. 급수공사의 준공검사 18. 급수공사의 직권 시행 19. 상수도 요금의 조정 20.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21. 정수 처분 22. 급수장치 철거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 한 법률 제34조 및 화순군가축 사육 제한에관한조례 제6조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 한 법률 제9조의 2 ○ 하수도법 제7조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25조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24조 ○ 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 징수에관한조례 제11조 ○ 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 징수관한조례 제13조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17조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44조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38조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18조 제1항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22조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37조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6조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6조 2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7조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17조 2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15조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28조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30조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40조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43조	읍면장 "	

실과 소명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및 적 용 법 률	수입기관	비 고
농산과	1. 수도묘관 공동방제사업 2. 수도비배관리 및 지도 계몽 3. 농약 공급 4. 농지전용 신고수리	○ 농업기본법 제3조 및 제9조 ○ 농업기본법 제3조 및 제9조 ○ 농업기본법 제3조 및 제11조 ○ 농지법 제37조, 농지법시행령 제40조,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	읍면장 " " "	
산림과	1. 신고에 의한(임야외) 입목 벌채 2. 가로수 관리 3. 입산신고	○ 산림법 제90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10호 ○ 산림청예규 제302호(87. 1. 3) ○ 산림법 제98조	읍면장 " "	
건설과	1. 도로점용허가 2. 도로공작물 설치 허가 3.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허가 4.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시행 시설물 사후관리	○ 도로법 제22조, 제4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 도로법 제22조, 제4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6조	읍면장 " " "	
도 시 경제과	1. 시장점포 사용허가 및 갱신 2. 토지 출입 허가 3. 토지형질변경 허가(1,000㎡이하) 및 단속 조치 4. 무허가, 위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 5. 연면적 85제곱미터(건축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부속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6. 제7조 제1항 제1호의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 로써 50제곱미터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다만, 동 조동항동호아목 및 카목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건축물의 증축을 제외한다. 7.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미만인 창고의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 제5조 ○ 도시계획법 제5조 제2항 ○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제92조 제1항 ○ 건축법 제69조 제1항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읍면장 " " " " " "	

실과소명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및 직 용 법 들	수임기관	비 고
도 시 경제과	8. 축목의 식재 9.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 5호 별표1의 시설 상호간의 용도 변경 다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병원, 슈퍼마켓, 금융업소 및 학원 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10. 생산품의 보관을 위하여 기존공장 부지안에 설치하는 임시가설 천막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읍면장 " "	
보건소	1. 대마 재배허가등 2. 방역소독조치 및 자율방역지도업무 3. 배정 범위안의 방역약품 유통 수불 및 방역장비 관리	○ 대마관리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14조 ○ 전염병예방법 제40조 ○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읍면장 " "	

[별표]

권한 위임 사항

(개정안)

실과소명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및 적 용 법 률	수임기관	비 고
총무과	1. 민방위 준비 명령 2. 민방위대 동원유예권	○ 민방위기본법 제28조 및 제41조 ○ 민방위기본법 제28조 제3항	읍면장	
재무과	1. 도세에 관한 제증명 발급 2. 도세의 납세 고지서 교부 3. 도세의 체납액 징수 독려 4. 도세 과세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	○ 도세조례 제6조 제2항 ○ 도세조례 제6조 제2항 ○ 도세조례 제6조 제2항 ○ 도세조례 제6조 제2항	읍면장 " " "	
사 회 복지과	1.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및 관리업무 2. 묘지이외의 토지 또는 타인의 묘지에 매장된 시체, 유골에 대한 개장 명령 3. 무연고 분묘 개장 허가	○ 식품위생법 제17조, 제22조 및 시행령 제13조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읍면장 " "	
농산과	1. 농약관매업 등록 및 폐업, 휴업, 재개업 2. 종묘상의 등록 3. 종묘상의 취소 4. 비료판매업 등록 및 신고 5. 비료판매업 등록 취소 6. 비료판매업의 등록 제한 7. 비료판매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 8. 비료판매업의 등록 및 취소의 공고 9. 부화업자 및 종제업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종제업 등록 및 취소 나. 부화업 허가 및 취소 정지 다. 종제업및부화업의 감독 10. 축견의 억류 조치 교부 11. 내수면 개발관리	○ 농약관리법 제10조 ○ 종묘관리법 제3조 제2항 ○ 종묘관리법 제15조 ○ 비료관리법 제15조 ○ 비료관리법 제12조 ○ 비료관리법 제23조 ○ 비료관리법 제12조 ○ 비료관리법 제12조 및 제20조 ○ 축산법 제26조 제1항 ○ 축산법 제21조 제1항 ○ 축산법 제32조 ○ 가축전염병예방방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	읍면장 " " "	

실과소명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및 적 용 법 률	수입기관	비 고
도 시 경제과	라. 옥상간판 ◦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마. 지주이용간판 ◦ 지면으로부터 광고물 상단 높이가 4m 미만인 간판 바. 애드벌룬 사. 현수막 아. 벽보 자. 전단 차. 창문이용광고물 2.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위반사항에 대한 관련법규에 의한 즉시 철거(제거)등 행정 지도 보고사항 3. 국립공원 전용 및 사용에 관한 무허가 행위 단속	◦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0조 ◦ 자연공원법 제16조 및 제17조	읍면장 "	
보건소	1. 제1종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다음 권한 가. 흥행집회 재래 기타 다수인의 집회제한 또는 금지 나. 전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 판매접수의 금지 기타 필요한 조치 다. 상.하수, 우물 쓰레기 변소의 신설, 개조, 변경, 폐지 또는 사용의 금지 조치 라. 쥐, 곤충, 기타 전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시설의 설치 변경 마.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수망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2. 현지 전염병 방역	◦ 전염병예방법 제39조 ◦ 전염병예방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동법 제39조 제1항 제4호 ◦ 전염병예방법 제39조 제1항 제7호 ◦ 동법 제39조 제1항 제8호 ◦ 동법 제39조 제1항 제9호 ◦ 전염병예방법 제38조	읍면장 " " " " " "	